

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아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을 농업중 작물재배업¹⁸⁾의 분류에 해당하는 작물(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은 벼에 한함)로 정함으로써 종전에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나열된 것만 과세하던 것을 농업중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모든 작물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농업의 분류는 아래 <표 5>와 같다. 앞으로 농업소득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곡물 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는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을 전문개정 하였으며, 종전의 농지세와의 농업소득세와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속하는 항목

- 대분류 : 농업 및 임업
- 중분류 : 농업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예 시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 벼, 보리, 밀, 수수 - 감자, 고구마 - 메밀 - 옥수수, 콩, 녹두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	- 풋마늘, 풋고추 - 파, 양파 - 아스파라거스 - 참외, 수박, 멜론 - 잎 및 열매채소
		화훼작물	- 정원수 - 조원용 풀 - 절화용 화초 - 분재

17) 농업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관리,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8)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도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다.